



코엑스 마곡전시장 시설운영규정



coex
magok

전시장 시설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2절 사용 조건 및 책임 한계
- 제3절 임대시간
- 제4절 전시장 출입
- 제5절 전시장 사용 규모 및 일정의 결정

제2장 전시장 시설운영

- 제1절 서비스협력업체
- 제2절 관리시설 설치
- 제3절 전시 부스 설계 및 장치공사
- 제4절 제한
- 제5절 부대시설

제3장 전시 운영

- 제1절 전시운영관리
- 제2절 보세전시장 설명

전시장 운영요령

- 전시장 경비원 및 운영 요원 배치요령
- 장치공사 시 유의사항
- 폐기물 처리방법

전시장 시설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1. 이 시설운영규정은 코엑스마곡이 전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시장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시설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코엑스마곡이 행사의 성격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판단 및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이와 같은 코엑스마곡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은 마곡 전시장 내에서 전시주최자가 다수의 전시 참가자를 유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마곡전시장 Hall, 로비를 총칭한다.
2. “전시주최자”는 코엑스마곡 으로부터 마곡 전시장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전시참가자”는 전시주최자가 조직하고 운영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는 전시주최자와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제2절 사용 조건 및 책임관계

제3조 사용 조건

1. 전시장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2. 사용자는 전시장 시설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주최자가 "전시장"을 회의용, 연회용, 혼합형 기능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전시장운영규정”을 시설운영규정 보다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전시장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다시 본 시설운영규정을 따른다.

제4조 시설운영규정 위반 시 조치

1. 사용자 및 서비스협력업체가 이 시설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코엑스마곡은 시정요구를 하고, 사용자 및 서비스 협력업체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전시지원업무 중지(전력공급 차단 등) 및 전시장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엑스마곡이 계약해지, 전시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사용자는 코엑스마곡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코엑스마곡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사용자가 코엑스마곡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전시 물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전시주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의 사고에 대비하여 코엑스마곡이 요청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제6조 불가항력 및 면책

1. 천재지변, 전쟁, 국가시책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코엑스마곡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전시장에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코엑스마곡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절 임대기간

제7조 임대기간 중 사용시간

1. 마곡 전시장의 임대기간은 전시장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의미하고 1일을 최소 임대 기간으로 하며, 임대기간 중 1일 기본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전시주최자가 1일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시장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 30분 당 1일 임대료의 5%를 시간 외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단, 1일 최대 시간 외 사용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절 전시장 출입

제8조 입장료 및 입장권의 판매

1. 전시주최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전시회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초청장을 발행하거나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판매수입은 전시주최자에 귀속된다.
2. 전시주최자는 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엑스마곡은 행사 종료 후 전시주최자가 매표소의 설치 운영에 실제 사용한 면적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9조 전시장 출입

1. 전시주최자는 코엑스마곡이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한 인원이 전시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주최자가 출입증 패용인원의 출입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고, 사전에 이와 같은 사유를 코엑스마곡에 소명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시주최자는 방법, 소방, 환경위생 등의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코엑스마곡이 확인하는 내방 인사의 출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코엑스마곡은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전시장에 수용 가능한 적정 인원을 초과한 수의 관람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객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절 전시장 사용 규모 및 일정의 결정

제10조 전시장 사용 규모 및 일정의 결정 권한

전시주최자가 사용할 전시장의 규모 및 전시장 사용 일정은 코엑스마곡이 결정한다.

제11조 전시주최자가 사용할 전시장 규모 및 전시장 사용 일정에 대한 결정 기준

코엑스마곡은 심의를 거쳐 전시주최자로부터 신청받은 전시회에 사용될 전시장의 규모 및 전시장 사용 일정을 결정한다.

제12조 양도금지

1. 전시장 사용규모 및 일정을 확정 받은 주최자는 코엑스마곡의 사전 승인 없이 그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참가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상기1항을 위반할 경우 코엑스마곡은 언제든지 전시주최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2장 전시장 시설운영]

제1절 서비스협력업체

제13조 서비스협력업체

1. 코엑스마곡은 전시장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 개최를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성, 해체 및 복구 등을 수행할 다음 각 호의 서비스협력업체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 ① 전시디자인설치 업체
- ② 전기시설 업체
- ③ 가구 및 비품 임대업체
- ④ 운수통관 업체
- ⑤ 카펫 및 파이텍스 설치업체
- ⑥ 철거 업체
- ⑦ 급배수 업체
- ⑧ 경비업체
- ⑨ 지게차 운영업체
- ⑩ 등록시스템 업체
- ⑪ 매표대행 업체
- ⑫ 광고 사인물 업체
- ⑬ 리깅 업체
- ⑭ 조립목공 판넬업체
- ⑮ 구조해석

기타 코엑스마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업체

2. 사용자는 전항 각호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업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타 업체 사용에 대한 코엑스마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서비스 협력업체가 전시장 시설운영규정 및 서비스 협력업체 운영매뉴얼(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확인서 교부, 서면 또는 구두 경고, 출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절 관리시설 설치

제14조 전기, 수도

전시품 작동용 및 국부조명용 전기공사, 급·배수시설 배관 등은 코엑스마곡의 감독 하에 전시주최자가 해당 서비스 협력업체를 통하여 전시장내에 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전시주최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5조 냉난방 시설

- 1. 냉난방은 기본 제공되지 않으며 전시주최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 2. 냉난방은 1회 가동 시 기본 7시간 또는 4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대가는

행사 종료 후 관리비로 부과된다. 단, 요청시간(7시간 또는 4시간)을 초과하여 냉난방을 용할 경우 실사용량(1시간 단위)만큼 시간외 사용료가 부과된다.

3. 전시주최자는 22시 이후에 냉난방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 이를 코엑스마곡에 사전 요청 하여 협의가 될 경우 냉난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16조 통신시설

전화 및 유무선 인터넷은 코엑스마곡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비용은 전시주최자가 부담한다.

제3절 전시부스 설계 및 장치공사

제17조 설계도서 제출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기술지원신청서, 전체평면도(축적 1:200) A3 사이즈 3부 및 전시회 참가업체 리스트를 코엑스마곡에 제출하여야 하며, 코엑스마곡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 및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공사의 승인

1. 코엑스마곡은 시공업체가 제출한 작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설치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코엑스마곡으로부터 전시부스 설치변경을 요청받은 경우나 자체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공업체는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시주최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전기설비 도면을 코엑스마곡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코엑스마곡이 상기 1, 2, 3항에 대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이나 조건부 승인을 한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변경이나 조건부 승인 부분에 대한 적용 없이 그대로 시공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체에 등록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전시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전시작동용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5. 상기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코엑스마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작업신고

1.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로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온라인 작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전시장 사용시간 외에 추가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전시주최자는 사전에 시간외 사용 신청서를 코엑스마곡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작업원은(자체시공 포함) 코엑스마곡 전시장 시설운영규정 및 서비스 협력업체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참가업체의 자체시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코엑스마곡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할 수 있다. 단, 작업신고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등록업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① 회사 내에 자체 인테리어팀이 있어 직원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사업자등록증에 실내장식, 건설, 가구제조 등의 종목이 등재) 또는 건설(실내건축 등)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건설면허증 사본제출)
- ② 시스템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계약서, 타행사장 또는 지난 행사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출)
- ③ 인테리어 자체가 전시품인 경우

제20조 작업일정

전시주최자는 코엑스마곡이 승인한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천장

1. 천장에는 배너 등 경량물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며, 설치를 위해 코엑스마곡에 설치위치 도면을 제출한 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시장 포인트 호이스트(리깅) 작업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① 포인트 호이스트(리깅) 작업 시에는 1조(분산하중 4.5M당 300KG) 중량하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시 사전에 포인트호이스트(리깅) 설치와 관련한 구조 계산서를 코엑스마곡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포인트 호이스트(리깅)에 매달리는 트러스 재질은 원칙적으로 알루미늄 소재 계열로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 ③ 트러스에 라이트 및 무빙라이트 등 액세서리를 부착할 때에도 고정 볼트 외에 안전고리를 추가 설치하여 이중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④ 포인트 호이스트(리깅) 작업 시에는 작업 반경 내 하단에는 일체의 다른 장치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안전요원(현장대리인)이 상주, 안전유도를 시행해야 한다.
 - ⑤ 트러스 등 구조물 작동에 필요한 전기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코엑스마곡에 등록된 전기업체를 이용, 시공해야 한다.
 - ⑥ 포인트 호이스트(리깅) 설치 현황

설치장소	포인트호이스트(리깅)	트러스 규격	분산하중	수량	비고
전시장 1층	모터1.5KW(개당) 모터중량58KG*160대	가로400*세로400 길이18M	1조(모터4EA) 4.5m당 300kg	40조	-

제21조 시설물의 높이제한

사용자는 다음의 높이를 초과하는 전시부스 및 구조물을 전시장 내에 설치할수 없다.

구 분	코엑스마곡 1층
제한 높이	5 M

주1. 주최자의 요청 시 부스 높이를 협의하여 시공이 가능.

주2.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코엑스마곡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복층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을 충족하는 경우 전시부스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전시 부스설치 신청서와 구조계산서를 전시장 사용개시일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복층면적이 전시부스 구조물 바닥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전시부스칸막이는 둘레의 1/2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4. 복층계단의 폭은 1.2m 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5.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 소화기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6. 복층 부분의 천장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
7. 복층 출입구는 넓이 0.9m 이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8. 구조계산자료의 내용과 시공이 상이할 경우 구조계산을 재검토하여 코엑스마곡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9. 공사완료 후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통로

1. 전시부스 간 통로 폭은 반드시 3m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전시품을 방치할 수 없다.
3. 비상구, EPS출입문, 소화전설비 및 화장실 입구 부분에는 전시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부스배정 시 상기 사항이 장애가 될 경우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 코엑스마곡과 협의를 거쳐 승인 받은 후 시공할 수 있다.
4. 전시부스 설치 시에는 이를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칸막이에서 30cm 이상 떨어지게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24조 사용자재

1. 자재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자재 표면에 페인트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친환경 수성 페인트에 한하여 코엑스마곡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할 수 있다.

제4절 제한

제25조 전기시설 규제사항

전시주최자는 전기공사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조명 및 전열설비 배선공사는 2.5㎟×3C 케이블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전시품 작동용 모든 기기는 C.V 케이블 사용을 하여야 하며 기기외함은 반드시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주전원 스위치는 노 퓨즈 브레이커(NO FUSE BREAKER)를 사용해야 한다.
4. 전기 메인간선 시공 시 전시품 기기/조명/전열은 각각 별도의 스위치(S/W)를 설치해야 한다.
5. 조명 및 콘센트 메인차단기는 반드시 누전차단기(E.L.B)를 사용해야 한다.
6. 220V 노출콘센트 설치 시 비접지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콘센트 기구 설치 시 전시 특성상 바닥에 설치하되 내방객의 안전에 유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7. 본 전시장의 전기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전시장 전기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기설비 공사 운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② 대한전기협회 발행 전기설비기준
- ③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8. 전시장 부스 내 전선은 비닐코드 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전시주최자가 전시장 내에서 발전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코엑스마곡에 사전 승인을 받고, 서비스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선로공사 등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주최자는 위 서비스협력업체 소속의 전문요원을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 상주시켜 위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매 시간마다 발전기 및 관련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한 뒤, 이를 매일 코엑스마곡에 보고해야 한다. 발전차의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하여 코엑스마곡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전시주최자가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제26조 급배수 규제사항

- 1. 급수배관에 사용되는 모든 배관 자재는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공업용수 급수호스(내경13mm)는 20kg 이상의 압력을 견디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3. 공업용수 호스 시공시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된다
- 4. 공업용수 급/배수 호스 파이프 와 호스 연결시 밴드로 견고히 조인다.
- 5. 공업용수 배수호스(내경20mm)는 5kg의 압력을 견디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6. 급수 호스와 전시품 기기 연결은 원터치 Connector로 사용해야 한다
- 7. 전시장내 급/배수 사용 전 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 8. 급/배수 시공 시 내방객 이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급배수 공사 규제사항 (카페테리아 포함)

- 1. 참가업체 및 카페테리아 부스 내에 급배수 설비 공사를 시행할 시 1차로 바닥을 방수포(시트), 비닐(0.2mm이상)등으로 2중 보양하여야 하며 마감은 파이텍스로 시공한다.
- 2. 급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모든 장비의 배수관은 해당 장비와 1:1로 체결하여야 하며 배수 라인 중간 연결T관 이음을 일체 금지한다. 또한, 모든 급배수 설비 공사는 반드시 코엑스마곡 서비스협력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외부업체 설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사고등 일체의 모든 책임은 전시주최자가 진다.
- 3. 공사 완료 후 급수 공급 전에 반드시 코엑스마곡 서비스 협력업체의 현장 시공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급수 공급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중량전시품 반입 제한

1. 다음의 상면하중(정지하중)을 초과하는 중량전시품에 대해서는 전시장내에 반입하거나 전시할 수 없으며 2.5톤 이상 전시품에 대해서는 반입 전에 동 전시품의 제원을 코엑스마곡에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코엑스마곡 1층
제한 하중	2.5톤 /㎡

2. 상기 1항의 상면하중을 초과하는 전시품을 반입·전시코자 하는 경우,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전시품에 대한 구조계산과 하중분산방안을 코엑스마곡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조치를 해야 한다.
4. 구조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 ① 구조계산서에는 설치위치를 정확한 문구 또는 도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 ② 시공도를 별도 작성하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방서를 포함해야 한다.
 - ③ 계산서에는 구조물 반입 및 출입, 설치 시 이동 및 충격하중을 표기해야 한다.
 - ④ 반입장비의 사양과 구조계산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⑤ 시공담당 현장대리인 및 구조물 시공자는 적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진동이 발생하는 전시장비에 대한 자료는 3개월 전에 제출하여 보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진동 발생 전시장비는 현장에서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책임은 전시주최자가 진다.
6. 상기 1, 2, 3, 4, 5항의 규정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전시품 반입 제재 및 전시작동용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시주최자 및 전시참가 업체에 있다.

제29조 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제한

1.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물 반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코엑스마곡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물품 이외의 위험물을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
2.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4. 전시장 내에서는 코엑스마곡의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
5. 위험물의 취급, 보관은 코엑스마곡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전기기기 사용 시 준수사항

1. 전시장내에서는 전기톱, 전기대패, 용접기, 전기그라인더 등 전동공구 및 산소절단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전시장내 콤프레서는 단상 2kW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단상 2kW 이상 시에는 작업전원을 별도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다.
2. 보일러, 용광로, 스토브, 에어컨 실외기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은 작동할 수 없다.
3. 전 1, 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코엑스마곡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

우 제1항과 2항 기재 물건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전열기구 사용제한

1. 전열기구 작동 시 표면온도 70℃ 이상인 때에는 안전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작동용 전열기구는 목재로 된 진열대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20cm 이상 높이의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열기구 부스바닥 카펫 설치 불가)
3. 전기취사구, 다리미 등 전열제품 등에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전시부스 내에서 전기조리기구(인덕션 등)는 사용 14일 전까지 코엑스마곡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 가능하다.
4. 전열기구 전원선은 내열전선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든 전열기구는 안전스위치가 설치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가스기구 사용제한

전시장 내부에 휴대용 부탄가스의 반입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제33조 흡연금지

전시장을 비롯한 코엑스마곡 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제34조 동물반입금지

1. 전시장을 비롯한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실내에는 시각장애인 안내 또는 위험물 탐지 이외 용도의 동물 반입은 금지된다.
2. 전시주최자는 부득이하게 일부 동물 반입이 필요한 경우(관련 국제행사, 국가행사 등)에도 반드시 사전에 코엑스마곡과 서면협의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동물의 반입 이후 전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생문제와 악취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전적으로 주최자가 부담한다

제35조 사용자의 방화관리책임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 기간 중 소화전 및 비상구의 위치, 가스전, 전원스위치의 장소 등을 확인하고 매일 폐문 시 화원(火源)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모든 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36조 로딩덕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전시장 1층 로딩덕은 전시품 등 화물을 하역, 반입, 반출하는 장소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 승합차(단, 화물용승합 허가 차량은 제외)는 로딩덕 진입이 불가하며 주차, 화물적재, 가구비품 등의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 광고안내 시설물 등의 설치

1. 사용자가 전시회 홍보를 위한 아치, 현수막 등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위치도 및 설계를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코엑스 마곡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비상구, EPS출입문, 소화전설비 및 화장실 입구 부분에는 광고안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절 부대시설

제38조 부대시설

1. 코엑스마곡은 전시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전시주최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주최자 사무실, 창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 전 1항의 경우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전시주최자의 책임 아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임대기간 종료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 코엑스마곡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 의무실

1. 전시주최자는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들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코엑스마곡은 전시회 성격 및 관람객 수를 고려하여 전시장 내에 의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주최자에게 의무실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전시운영]

제1절 전시운영관리

제40조 친환경 운영

1. 전시주최자는 친환경 자재 및 재활용 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코엑스마곡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전시장 내부 통로공간의 경우 파이텍스 및 카펫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코엑스마곡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 전시차량 반·출입

전시주최자는 전시품 중 번호판이 있는 전시차량에 대하여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경비원

1.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 기간 중 경비원을 두어 전시장 개폐, 보안 및 관람질서

- 유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 기간 중 화재,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경비원을 고용,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사는 전시 주최자가 추가안전요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관람객 질서유도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전년도 행사관람객이 많은 전시회
 - ② 전시회 성격상 많은 관람객이 예상되는 전시회
 - ③ 콘서트 등 대규모 공연 행사 등
 3. 전시준비, 철거 차량의 진출입 및 전시품의 반입, 반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시 주최자는 적절한 수의 경비원을 로딩덕에 상시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시장 경비원 및 운영요원 배치 요령 참고)
 4. 경비원은 전시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코엑스마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전시주최자는 대규모 참관객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전시회 개최 14일 전까지 경비원의 명단 및 배치계획을 포함한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음식물의 제공

1. 사용자는 전시장 내외에서 음식물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2. 전시회 등의 운영상 시식, 시음 등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코엑스마곡에 신고한 뒤, 코엑스마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물품의 판매금지

전시장 내외에서 물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행사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판매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코엑스마곡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진행할 수 있다.

제45조 전시장 관리

1. 사용자는 전시장내의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손상, 파손 및 분실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사용자는 전시회 종료 후 전시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 또는 관람객이 전시장 내에서 분실 또는 유실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46조 원상복구

1. 전시주최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전시장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집기비품 등의 상태를 코엑스마곡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전시주최자가 전시장 또는 전시장 내 시설이나 비품을 사용하다가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 이 발생한 경우, 전시주최자는 이를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만일 전시주최자가 코엑스마곡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차관련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코엑스

마곡이 원상복구를 대행하되, 이 경우 전시주최자는 코엑스마곡의 원상복구
대행비용청구에 따라 즉시 청구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비상상황

1. 전시장 내부 및 외부에서 화재, 지진 또는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전시주최자는 코엑스마곡 전시,컨벤션 지원센터 사무실(02-767-6006,6007,6008,6009)과 즉각적인 연락을 위하여 상황을 파악 하고, 전시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시주최자는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2절 보세전시장 설명

제48조 보세전시장의 설명

전시주최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전시장을 보세구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49조 보세전시품의 관리책임

1. 보세전시품이 전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세전시품 관리를 위해 세관원 및 코엑스마곡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보세전시품의 반·출입 관련 제반 행정수속 및 관리는 전시주최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시장 운영요령

[전시장 경비원 및 운영요원 배치요령]

1. 목적

본 배치요령은 전시장 개방 시 안전사고 방지 및 전시회의 효율적,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원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2. 경비원 배치기준

전시회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경비 투입인원을 본 기준에 적용한다.

전시 시기별	규모 (7,452㎡)	경비 인원					
		입구	출구	전시장 내부순찰	화물 출입구	로딩덕	계
준비		1		4	2	2	9
행사		2	1	2	1		6
철거 (당일철거포함)		1		6	2		9

3. 운영요원 배치기준

공연, 이벤트 및 대규모 관람객이 예상되는 특수한 경우의 행사시 운영요원은 행사의 규모 및 참관객의 수에 따라 코엑스마곡과 별도 협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 등 포함)

[장치공사 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1) 코엑스마곡에 등록 및 신고된 전시장치 및 기타 서비스협력업체(이하“협력업체”라 함)는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작업 수행 시 코엑스마곡이 제정, 시행하는 전시장 시설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비등록업체는 전시장 내에서 장치 및 기타 공사를 할 수 없으며, 등록업체가 비등록업체에 명의를 대여하여 시공케 할 수도 없다.
- 3) 전시장 내에서 모든 작업자는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코엑스마곡 시설운영규정 및 서비스협력업체 운영매뉴얼을 준수, 시공하여야 하며(자체시공 포함) 규정 등을 수시 위반자는 전시장 내 작업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4) 등록업체는 전시장 내 공사와 관련해 작업개시 14일 전 시공업체 명의로 된 작업신고서에 전시부스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 장치공사 중 임시전력(작업전원, 기타)이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코엑스마곡과 사전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6)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작업은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에 끝나야 하며, 특히 철거지연으로 차기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도의 철거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주최자가 져야 한다.
- 7) 전시기간 중 전시장 내부에 각종 전시물 또는 선전물을 부착할 경우는 사전에 코엑스마곡과 협의하여야 한다.
- 8) 전시장의 소음레벨은 야간 65dB, 주간 75dB 이상의 경우 주위 전시부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최고 80dB를 초과할 수 없다.

2. 작업제한사항

- 1) 전시장치물은 각 시공업체 작업장에서 제작하고, 전시장 내에서는 장치물의 조립 등 전시장치 완공에 따른 공사만 시행하여야 한다.
- 2) 모든 작업은 전시장 시공부스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전시장내 통로, 전시장 밖, 주차장 출입구, 외부 진입통로에서의 일체의 작업 및 재료의 적재행위를 금한다.
- 3) 장치공사를 위하여 벽면 등 전시장 시설물에 못이나 철사 등으로 고정할 수 없으며, 특히 벽면에 도배 또는 페인팅, 스프레이 작업 등을 하지 못한다.
- 4) 전시장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전시주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5) 전시회 종료 후 전시부스 철거 시 일체의 시공 장치물을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전시장 내에 장치물 잔재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6) 장치공사 시 전시장 소방시설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시의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연성 자재 및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로비 장치공사 요령

- 1) 로비 내에서는 장치물의 조립 등 전시장치 완공에 따른 작업만 시행하여야 한다.
- 2) 전시장치물 및 전시품 설치 시 바닥 보양을 목적으로 파이텍스(카펫)를 설치하여야

- 하며 코엑스마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판 등 추가 보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 3) 전시장치물 설치 시 기존 시설물 벽면으로부터 최소 30cm ~ 최고 1m까지 이격 설치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
 - 4) 전시부스는 기본 조립식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부스는 코엑스마곡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 5) 장치공사 시 소방시설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6) 자재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불연성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7) 기타 사항은 전시장 시설운영규정을 적용한다.
 - 8) 전시준비 공사 전에 일반인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9) 소음레벨은 야간 65dB, 주간 75dB를 초과할 수 없다.
 - 10) 시설물 높이는 2.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11) 모든 로비 장치물 작업은 18:00 이후(단, 철거작업은 20:00 이후)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조치 및 공사 안내문을 설치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2) 사용 기간 중 전시장과 동일하게 코엑스마곡의 지시에 따라 경비원을 두어 보안 및 관람질서 유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방법]

1. 대상 폐기물

전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파이텍스, 코팅된 종이류, 목재류 등 전시준비 및 철거시 발생하는 재활용 되지 않는 폐기물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특별처리가 필요한 유해성 폐기물 등)

2. 처리과정

- 1)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 배출자(전시주최자) 비용부담으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처리절차
 - ① 장치업체 또는 참가업체 배출
 - ② 청소업체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하여 반출
 - ③ 주최자 승인 후 모든 쓰레기 수거 반출
 - ④ 쓰레기 처리업체 분류작업(재활용과 전시폐기물)
 - ⑤ 분리된 전시폐기물 계량작업
 - ⑥ 주최자 최종 확인
 - ⑦ 종량제 봉투 작업 후 최종처리장으로 반출
 - ⑧ 비용청구

3. 기타사항

전시폐기물 잔재는 로딩덕에 방치 및 적재를 할 수 없다.